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 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건축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활동을 위한 건축사업무신고 제한요건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사자격의 심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자격심의회원의 설치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12월2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 이 용 섭**

**◎법률 제87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5분의 4”를 각각 “4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 제65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및 제76조제2호 중 “제28조제3항”을 각각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

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7호의2·제81조제1항·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30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주민대표회의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요건 완화(법 제16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함.

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확대(법 제26조제2항)

보다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

다. 교육환경의 보호(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7호의2 신설).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법 제81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6호 신설)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12월2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 이 용 섭  
관

●법률 제878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